

2026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

2026. 02.



목 차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 1. 숙명여자대학교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3
- 2.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절차 4
- 3.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4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1. 재난 및 교육시설 안전사고 7
 - ① 자연재난 11
 -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12
- 2. 학교 안전사고 13
 - ① 학생 안전사고 13
 - ② 감염병 18
 - ③ 연구실사고 21
 - ④ 산업재해 24
 - ⑤ 중대재해 29
- 3. 범죄 34
 - ① 일반범죄 37
 - ② 성범죄 38
- 4. 기타 39
 - ①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39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40

IV.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42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48

1. 숙명여자대학교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숙명여자대학교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안전·보건 목표와 추진전략

· 목표

숙명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

· 추진전략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2 안전사고 “ZERO” 캠퍼스 조성
- 3 안전 의식·문화 확산

안전·보건경영방침

숙명여자대학교는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및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재난, 재해 등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1. 우리 대학은 정기적인 위험요인 자체진단을 실시하는 등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한다.
2. 우리 대학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유해·위험요인을 예측한 선제적 대응 관리로 안전사고 “ZERO” 캠퍼스를 조성한다.
3. 우리 대학은 대학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능동적인 안전 의식·문화를 확산한다.
4. 숙명 구성원은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한다.

2024년 5월 29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절차

□ 수립 목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업무처리 절차 마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주관 부서 조직하여 구성 운영

□ 수립 절차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안전사고, 범죄,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 및 시행하며,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대학 대표 홈페이지에 게시

3.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숙명여자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청파동 2가)				
전 화	02-710-9052	FAX	02-710-9058	홈페이지	www.sookmyung.ac.kr
총장	문 시 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 상 일 (사무·관리처 처장)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10,134	2,934	13,058	
교직원 (명)	전임교원	직원		합 계
		교직원	현업업무종사자 (용역)	
	418	365	180	963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비상 대피소 안내

대피소 명	현장 사진	건물별 대피소 위치
명재관(기숙사) (1층 식당)		명재관
진리관 지하 대피소 (진리관 지하 1층)		명신관, 진리관, 순현관, 수련교수회관 등
순현관 지하 대피소 (막커 라운지)		순현관, 행파교수회관 등
수련 교수회관 1층 대피소 (수련교수회관 101호 E문우물)		수련교수회관
행정관 지하주차장 대피소 (지하1층, 지하2층)		행정관, 새협관, 학생회관 등
중앙도서관 지하 대피소 (지하1층, 구A,B명람실)		중앙도서관, 과학관 등
제2공학 주차장 대피소 (지하3층)		백주년기념관, 약학대학, 사회교육관, 미술대학, 음악대학, 르네상스몰라자 등

● 일상 생활 중 공용 등 비상시 대피장소(가까운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관 건물 지하공간 등)
 ●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 에서 대피소 조회 가능

아래층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비상 대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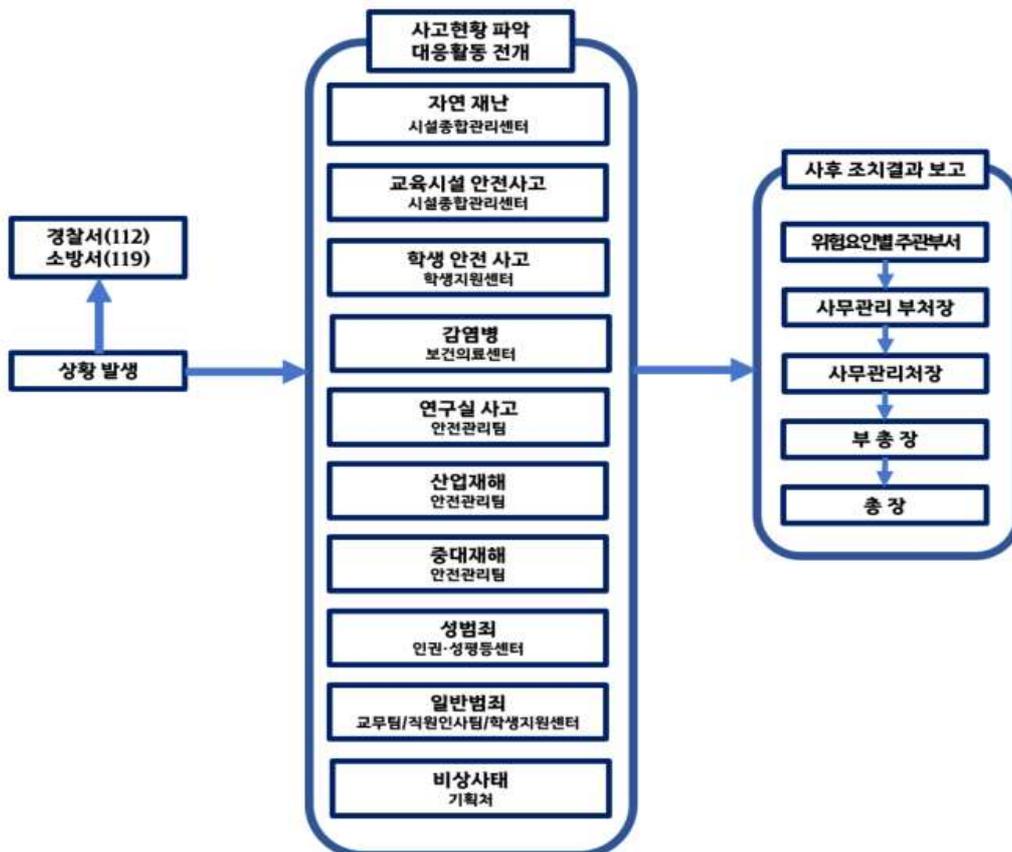
② 조직체계 현황

□ 위험 요인별 주관 부서

구 분	유 형	주관 부서
총 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관리팀
재난 및 교육시설 안전사고	자연 재난	시설종합관리센터
	교육시설 안전사고	시설종합관리센터
학교 안전사고	학생 안전 사고	학생지원센터
	감염병	보건의료센터
	연구실 사고	안전관리팀
	산업재해	안전관리팀
	중대재해	안전관리팀
범 죄	성범죄	인권·성평등센터
	일반범죄	교무팀, 직원인사팀, 학생지원센터
기 타	비상사태	기획처

※ 주관 부서 요청 시, 모든 부서는 협조하여야 함.

□ 상황 발생 시 업무처리 체계도



□ 위험 요인별 연락망

위험 유형	주관 부서	연락처
자연 재난	시설종합관리센터	9052
		9236
		9804
		9967
교육시설 안전사고	시설종합관리센터	9052
		9050
		9967
학생 안전사고	학생지원센터	9032
		9268
감염병	보건의료센터	7688
		9147
연구실 사고	안전관리팀	9053
		9806
산업재해	안전관리팀	9053
		9598
중대재해	안전관리팀	9053
		9598
일반범죄	교원 담당: 교무팀	9012
	학생 담당: 학생지원센터	9032
	직원 담당: 직원인사팀	9042
성범죄	인권성평등센터	7260
		7521
비상사태	기획처	9061
		9092

※ 야간 및 공휴일에 상황 발생 시, 통합상황실 (02-710-9119) 신고

1. 재난 및 교육시설 안전사고

« [재난공통] 재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예방교육

- 자연재난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재해취약시설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자연재난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수행

○ 홍보활동

-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퍼스 내 재난유형별 예방 활동 동아리 운영, 포스터 공모전 등 홍보 활동

○ 재난대응훈련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대학 구성원 대상의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관심-주의-경계-심각) 및 재난단계별 보고·전파
-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담당 부서 및 실무자(정·부) 지정 관리

○ 재난단계별 매뉴얼 운용·대응

- **1단계** 관심, 주의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
- 비상연락망 점검, 당직실, 담당부서 순찰 등 수행

- **2단계** 경계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비상근무 체제 돌입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 부서별 협의(긴급 대피, 홍보 등)
- 교내 재난관리담당부서와 연락망 유지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 **3단계** 심각단계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재난관리본부 구성 및 대학합동상황실 운영
- 필요 시 재난관리본부 내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지원
- 교육부 및 시 재난대책본부, 유관기관 협의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

- 재난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 보고·전파 체계 가동
- 중대 재난발생 시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사고 상황 및 대피로 등을 전파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구축된 재난안전관리 주관·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및 기관별 보유 자원(캠퍼스 시설 등) 공유 및 관련 내용 제공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피해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제출 (피해신고)

○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 조사표 및 조사서 대장을 통한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복구계획(안)에 포함시켜 복구계획 수행에 반영

○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 의료반의 편성·운영
- 보건소, 보건지소 등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 경상자는 원거리의 병·의원으로 후송
- 중상자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의 종합 병원급으로 후송
- 보상의무자의 치료비 부담능력 및 보험조치 가능여부 확인 조치

- **사망자 대책**

- 사망진단을 위한 병원 후송
- 사망자 신원 파악 후 유가족에게 즉각 연락
- 진단 후 보상 내용 결정(장례비, 유족배상 등)
- 보상금 지급·정산

- 구호활동

-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구호센터 설치·운영
- 상황에 따라 군부대 또는 시·군 의료구호반 파견 요청
- 의료활동 외에 상담 등 대피소 순회진료 등 구호활동 실시
- 피해지역 보건소장이 신속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보건 대책 현지 본부를 설치, 체계적인 구호활동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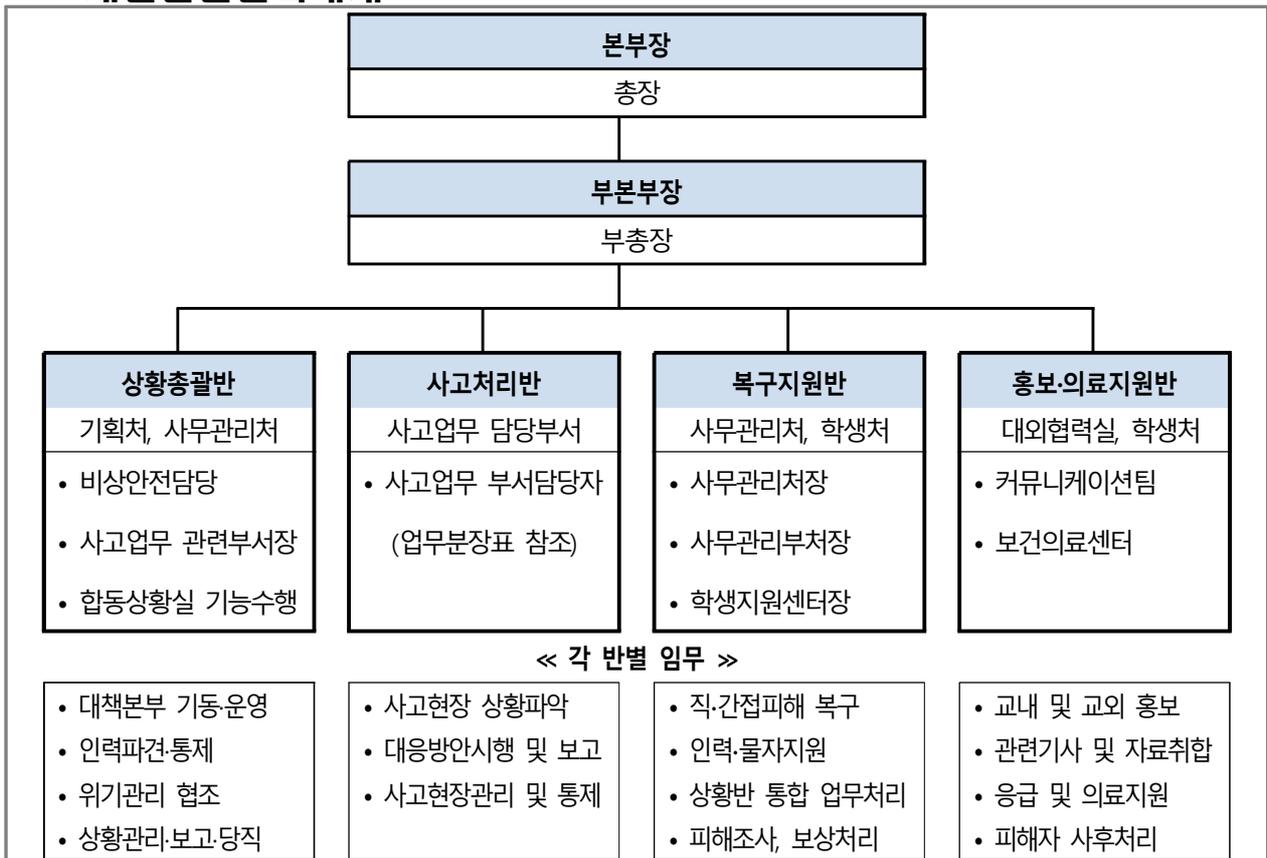
○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 * (원상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이 파손되어 기존 시설과 유사하게 복구
- ** (개량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 파손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

○ **재난 모니터링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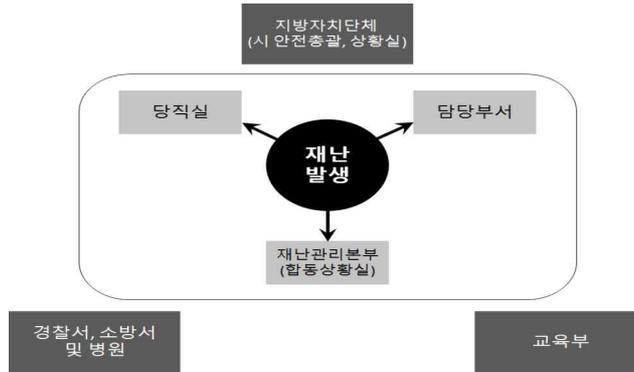
- 대학 내 발생한 실험실습실 사고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제거 및 예방활동에 활용
- 중대 안전 사고의 전 과정에 대한 실행 측면과 조직 복원성 수준 측면 모두에서 개선사항 파악
- 도출된 개선사항은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보완·추진

□ **재난안전관리체계**



□ 재난대응복구 연락 체계

○ 대학 내·외부 재난 상황 전달 체계



○ 재난 심각단계 이전



○ 재난 심각단계



재난대응·복구 체계·절차



1 자연재난

□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 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2] 교육시설 안전사고

□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공조장치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및 위기경보 발령 시 학사운영 대책방안 마련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2. 학교 안전사고

① 학생 안전사고

□ 위험요인

- **(학생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활동)**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예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절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교외활동)** 대학본부, 단과대학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시설 이행, 행사 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사고유형별 예방·관리)

○ 교내 교통안전

- 교내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개선
- 보행자·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차도 분리시설 마련
- 교내 공사장 주변에는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 교내 차도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건물의 출입지점과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설치·개선
- 교내도로는 양호한 배수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의 바닥이 평평하고, 파손에 의한 틈새나 구멍이 없고, 흙이나 물기 등에 의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보행자들의 발이 미끄러지거나, 걸리거나, 부딪치거나, 헛 딴어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바닥표시와 안내판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는 비상 시 비상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시야 방해물이 설치·적재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속도 규정을 마련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관리
- 교내 경사도로에는 미끄럼방지, 과속방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행사 안전

- 입학식, 졸업식 등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는 참가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행사시설 점검·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요원 배치
-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행사계획 수립 시 「행사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사 시작 일 2주 전까지 행사 승인부서(학생처)에 제출
- 대규모행사의 경우 행사기획팀, 장소와 배치 설계, 의료진, 비상계획과 경비, 커뮤니케이션, 교통, 계약자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행사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승인요청서」와 함께 행사 승인부서(학생처)에 제출
- 행사장소 및 사람에게 차량 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애물을 설치하고, 경비인력 배치 등 예방 대책 마련
- 행사승인 부서는 행사 관련 정보, 위험성 관리방안, 안전점검사항, 행사 예상 참가 인원, 행사 관련 계약업체, 보험가입여부 등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후 승인
- 행사승인 부서는 대규모행사를 준비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에 대해서 이들의 안전한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을 제공
- 행사와 관련한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계약업체나 서비스업체는 상해보험 가입
- 비상 시 신속한 대피·응급처치를 위해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비상탈출구, 화재경보기를 확인하고, 비상 집합장소 지정, 신속한 사고신고·보고 방법 등을 포함한 비상 절차 마련
- 행사 시 전기안전, 식품안전, 행사에 사용되는 놀이기구 등의 안전지침 마련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 확인·점검

○ 학생 집단활동 안전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는 학기 초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교육
- 대학생 집단행사 시 인파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 학생집단연수를 주관하는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기획자, 인솔자, 참가자의 역할과 책임
- 학생집단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승인
- 학생집단연수 참가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 사고 및 위기 발생 시의 대응계획
- 보험가입

- 비상 연락 체계와 방법
 - 학생집단연수에 대한 감독 활동
 - 참가자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사항
 - 요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숙박 및 식사 안전
 - 집단연수 계획 수립에서 계획 시행까지 전 추진과정에 대해 인파밀집 상황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비하되, 자체 점검 및 사전교육 조치
 -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교직원 등 안내자(인솔자)가 안내하도록 하고 앞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 인파사고 예방 조치
 - 집단연수, 행사 운영 등의 과정에서 위험한 인파 속에서는 인파의 흐름에 따르면서 천천히 대각선으로 가장자리를 향해 움직이며 탈출로 찾기
- ※ 가장 가까운 출구, 모든 출구 위치 확인 필요

- 해외 학생 집단연수를 기획하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의 탐색, 평가관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집단연수 4주 전까지 학생처에 제출

○ 현장실습 안전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예방 관리

-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성희롱 교육 등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요청(실습기관)
- 실습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휴일 보장에 관한 사항 협의
-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참관 하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근로문제 예방 및 권익보호 강화

-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문제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확인
 - ※ 실무직무 범위 내 노동관계법령 준수, 운영계획서 제출 시 실습기관과 협의.체결
- 학생의 현장실습 상황 모니터링 및 확인.관리
 - ⇨ 학생이 부적정한 실습사항*을 알려온 경우 실습기관에 시정요청, 중단 및 복교조치
 - * 실습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부여.지시.강요, 실습시간 기준 위반, 실습지원비 미지급 혹은 기준이하 지급, 산업 안전.재해.보건.위생.성희롱 등의 문제, 현장실습 운영조건 변경.조정 발생 등

○ 생활 안전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강의실, 강당/체육관, 도서관(실), 미술/음악/무용실, 주방/식당, 사무실/작업·실습실/회의실, 공용공간 (현관/복도/계단/화장실), 체육장, 옥외 공간(조경/수경시설), 옥외 조형물 등

- 교내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안전을 위한 대학의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시 대응절차 및 대응행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연락망 편성·관리 및 안내·배포
- 대학생활 관련 안전교육·훈련 제공 지원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 위급상황의 안전성 확인 및 안전성 확보
- 위험원으로 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이격 조치 및 상태 유지
-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응급처치 시행 또는 치료 제공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사고 등급에 따른 보고 기준

- (심각) 학교장 및 교육부에 지체없이 보고
- (경계) 학교장 및 교육부에 신속하게 보고 (1시간 이내)
- (주의) 학교장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 (근무일 기준 1일 이내)
- (관심)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내부 관련 문서에 기록·관리

※ 자동적으로 '심각' 등급을 받는 사고(또는 위급상황)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2 감염병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에 의해 비말, 호흡기, 눈·코·입 점막 침투로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질환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비대면 교육)** 감염병이 지속되는 동안 대학의 각종 활동(수업·행사·자치활동·운동부 훈련 등)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기를 원칙으로 학사 운영
- **(대면 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 조기 발견·조치 등 대학 내 전염병 감염 전파확산을 방지
- 감염병 예방 및 발생 상황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
 - 예방단계와 대응단계로 구분하고 대응단계는 평상시와 국가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과 상태에 따른 대응활동들을 제시함
- **(감염병 관리원칙 수립)** 감염병 환자 발생과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에 대비한 감염병 관리 원칙 마련
- **(감염병 관리조직 및 발생감시체계 구축)** 감염병 환자 발생과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에 대비하여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하고 교내 감염병 (의심)환자의 발생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경보수준에 따른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대응 >

단계	판단 기준	학교 내 발생가능성	대응
예방	· 평상시	없음	· 일반적 대비 · 대응체계 구축
국가위기 경보수준	관심 (Blue)	·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 구체적 대응 방안 검토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 구체적 대응 방안 검토 · 징후 감시 활동(필요시)
	주의 (Yellow)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한 감시 및 대응 실시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대응체제 가동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한 감시 및 대응 강화
심각 (Red)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징후	전국적	· 대응역량 총동원 · 범정부적 협조체계 강화 · 전국으로 감시 및 대응 강화 확대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복구	· 유행 종료	산발적	· 평가 및 보완 · 복구 · 감시 활동 유지

I. 평상시

감염병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활동을 수행

1. 교내 감염병 관리 조직

조직	담당부서 또는 직위
감염병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처장단, 보건의료센터장
감염병 대응 본부	
감염병 총괄관리자	부총장
감염병 발생 감시자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관리처장, 국제처장, 대외협력처장, 보건의료센터장
감염병관리 실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관리 실무반장 : 사무·관리처 부처장 행정부서 센터장 및 팀장, 보건의료센터 선임직원

2.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는 교내 감염병 발생 정보를 취합, 감염병 총괄관리자와 교육부에 보고 하고,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총장에게 보고함
- 총장은 신고대상 감염병*(홍역,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이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감시 대상에는 학생과 교직원을 모두 포함하며, 특히 기숙사 입소생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함
- 보건의료센터에서 감염병 의심 증상을 가진 학생/교직원을 발견하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권장하고, 진료결과를 확인함.
- 기숙사의 감염병 관리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하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권장하고 진료결과 확인을 통해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함.

3. 예방접종 관리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학교 내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정기적으로 권장함
- 기숙사 입소생들은 단체 생활로 인해 감염병 발생 시 전파위험이 높으므로 전파 위험성이 높거나 발생 시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의 실시를 권장함
(기숙사 입소생 대상 권고 예방접종: 홍역/풍진/유행성이하선염(MMR), 수막구균)
- 해외 유학생 대상 예방접종 관리 : 국가예방접종의 접종력을 확인할 수 없는 해외 유학생의 경우에는 접종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접종을 권고함(국제팀 협력 진행)

4. 감염병 예방교육

-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대처 능력의 향상을 위한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
- 교육의 내용: 감염병 일반 예방수칙(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방법, 감염병 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 해외여행 시 감염병 예방요령 등

5. 방역

감염병 유행 시 필요한 방역물품 준비

6. 소독 및 환기

- 정기 소독 실시
-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의 창문과 출입문을 동시에 10분 이상 열어 충분히 수시로 환기

II. 감염병 발생 시 대응

1. 감염병 의심 증상자의 발생 시 대응

- ① 보건의료센터 방문 학생/교직원의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여부와 의료기관 진료여부를 확인하고 미진료 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안내함(필요시 유증상자 마스크 착용하도록 안내)
 - 대학 보건실에서는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의 진료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② 감염병 관리자나 교수, 조교 등이 발견한 경우

- 유증상 학생 또는 교직원의 의료기관 진료여부를 확인하고 미 진료 시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센터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안내함
- 관련 사실을 대학 보건의료센터로 통보, 보건의료센터는 추후 진료결과를 확인하고 감염병(의심)환자인 경우 감염병 총괄 관리자에게 보고함

2.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

① 보고 및 신고

- 최초 (의심)환자의 발생을 인지한 경우, 감염병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함
- 법적 신고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인 경우 총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가 대리 신고 가능)

 신고 대상 법정감염병

- 종류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홍역, 결핵
- 신고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등 모든 방법으로 가능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

② 해당 감염병 발생 감시 강화 : 학생/교직원 중 (의심)환자 추가 발생을 파악함

③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 보건의료센터에서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예방 교육 자료를 작성, 예방교육 실시
- 교육 내용 : 주요 증상과 예방법, 증상 발생 시 행동 요령 등
- 교육 방법 : 학교 홈페이지 공고, 메일 발송, 유인물 배부, 홍보용 포스터 게재 등

④ 유행의심 여부 확인

-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는 추가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유행의심 기준」에 따라 유행의심 여부를 판단함
-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가 유행의심 상태로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유행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활동들을 수행함
- 만약 기존 (의심)환자가 완치되고 최대 잠복기 동안 (의심)환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예방단계로 복귀함

「유행의심 기준」

- ① 최대 잠복기 이내에 동일 학급에서 의심 또는 확진 환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② 최초 (의심)환자와 동일 학급은 아니지만 추가 (의심)환자가 이동식 수업이나 급식 등 공통된 장소에 노출되어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
 - 사례 1: 최초 (의심)환자와 같은 학급은 아니지만 추가 (의심)환자가 최초 (의심)환자가 발견된 당일 이동식 수업을 함께 들었음이 확인되면 유행의심 기준을 충족함
 - 사례 2: 서로 다른 학급 학생인 2명의 (의심)환자가 증상 발생 하루 전 학교 구내 매점에서 김밥을 먹은 것으로 확인되면 유행의심 기준을 충족함

⑤ 후속 조치

- 유행의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응 제3단계로 격상
- 기존 (의심)환자가 완치되고 최대 잠복기 동안 추가 (의심)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예방단계로 복귀

③ 연구실 사고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연구실사고) 연구실 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6개 분야, 13개 항목)을 분류하고, 각 사고 유형 별 예방·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한 연구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등 직무별 대응·행동요령 및 책무 제시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연구실 사고유형별 대응 요령
- 화학 분야
 - 가. 화학분야 사고 예방법
 - MSDS/GHS 비치 및 교육
 - 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보관
 - 폭발 대비 대피소 지정
 - 폐액은 종류별 각각 분리하여 보관하고, 폐액 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그늘진 곳에 보관
 - 폐액 처리 및 폐액 용기 운반 시 보호구 착용
 - 나. 화학분야별 사고 대응요령
 - 주변 연구 활동 종사자들에게 사고 전파
 - 안전 담당 부서(안전관리팀:02-710-9806, 경비실:02-710-9219)에 상황 신고
 - 화학물질에 노출·접촉 시 유해물질에 노출된 부위를 깨끗한 물로 15~20분 이상 세척(금수성 물질이나 인 등 물과 반응하는 물질이 묻었을 경우 물로 세척 금지)
 -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시 유해가스 또는 연소생성물의 흡입 방지를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시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경우 초기진화를 실시하고, 초기진화가 힘든 경우 지정대피소로 신속히 대피
- 가스 분야
 - 가. 가스분야 사고 예방법
 - 가연성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옥외저장소에, 독성 가스용기는 옥외저장소 또는 실린더캐비닛 내 설치
 - 가연성 가스검지기 설치 및 관리

- 독성가스 특성을 고려한 호흡용 보호구 비치
- 가스용기 고정 장치 설치
- 상시 가스누출 검사 실시

나. 가스 분야별 사고 대응 요령

- 가스누출 사고 발생 시 사고 전파 및 건물 내 체류 중인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림
- 독성가스 누출 시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밸브차단 및 환기 등 조치
- 유독기체 흡입 부상자의 경우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기고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
- 누출규모가 커서 대응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대피하고, 대피 시 출입문 및 방화문을 닫아 피해 확산 방지

○ 전기분야

가. 전기분야 사고 예방법

- 고전압 및 감전 안전보건표지 부착
-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 취급 금지
- 전기기기의 수리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비규격 및 안전인증 미취득 전기제품 사용 금지
- 개인보호구 보유 및 실험 형태에 따라 반드시 착용
- 전기 관련 실험 시 안전거리 확보
- 용량을 초과하는 문어발식 멀티콘센트 사용 금지 및 전열기 근처에 가연물 방치 금지
- 멀티탭을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이 달린 제품을 사용

나. 전기분야별 사고 대응 요령

- 해당 전기기기 전원 신속히 차단(감전 사고에 대비, 절연장갑 착용)
- 감전 사고의 경우 구호자의 2차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봉을 이용하여부상자를 구호하고 부상자와 신체접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 시 해당 기기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물 분사 금지
- 부상자의 상태(의식, 호흡, 맥박, 출혈 유무 등)를 확인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119, 병원 등)에 신고

○ 생물 분야

가. 생물 분야 사고 예방법

-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안전교육 이수
- 연구실은 승인받은 자만 출입하고 출입문은 항상 닫아둠
- 연구실별 생물사고 대응 도구 구비
- 병원체 특성별 병원 연계 체계 구축
- 자체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위해성 평가 완료한 생물실험체, 병원체, LMO에 한해 실험

나. 생물 분야별 사고 대응 요령

- 병원체 유출 사고 시 부상자의 오염된 보호구는 즉시 탈의하여 멸균 봉투에 넣고 소독제 등으로 오염 부위 소독
- 부상자 발생 시 부상 부위 및 2차 감염 가능성 확인 후 보건 담당자에게 알리고, 필요시 119 신고
- 병원체 유출 사고 시 흡수지로 오염 부위를 덮은 뒤 그 위에 소독제를 충분히 부어 오염의 확산을 방지한 후 퇴실
- 2차 피해 우려 시 접근금지표시를 하여 2차 유출 확대 방지
- 생물안전작업대(BSC) 내 유출 사고 시 팬이 가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밑에까지 내린 뒤

대피

- 생물안전작업대 내 유출 사고 시 생물유출사고 대응 도구 내에서 새 장갑과1회용 보호구를 착용 후 탈 오염작업을 실시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 용기 또는 멸균봉투에 사용한 물질 폐기
- 동물에 물리거나 바늘 등에 의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 즉시 실험을 멈추고 부상 부위에 식염수나 소독제로 소독하고 출혈 시 지혈
- 생물안전 관리자, 동물실험실 관리자 등에게 경위를 설명하여 사고 대응 지시를 받음

○ 기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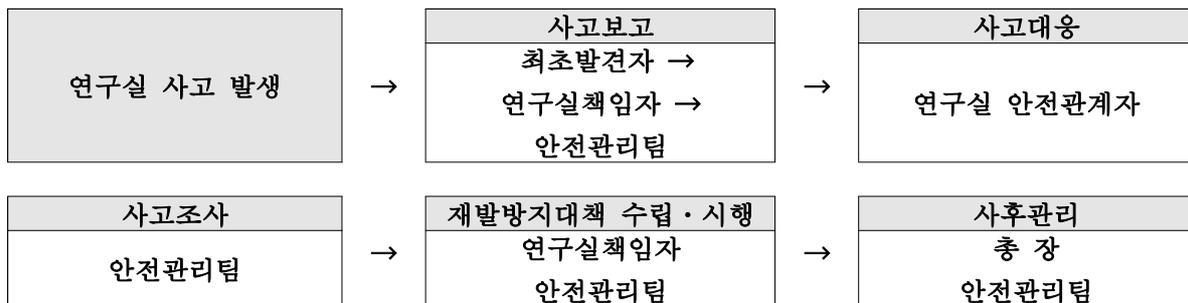
가. 기계 분야 사고 예방법

- 기계 안전장치(방호덮개, 비상정지장치 등) 설치
- 주의사항 게시 및 사용 시 개인보호구 착용

나. 기계 분야별 사고 대응 요령

-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사고발견 즉시 사고 기계의 작동 중지
-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겨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 절단 사고의 경우 출혈이 심하므로 상처에 깨끗한 천이나 거즈를 두툼하게 댄 후 단단히 매어서 지혈 조치
- 절단 부위는 깨끗이 씻은 후 비닐에 싼 채로 얼음을 채운 비닐봉지에 짓지 않도록 넣어 접합 전문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
- 신고

○ 연구실 사고 대응 단계



가. 사고조사

- 중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총장은 즉시 현장 사고조사반 구성하여 현장 상황파악
- 사고 조사는 물적 증거가 손상, 손실되기 전(늦어도 사고 대응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착수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사고조사기관에 조사 의뢰
- 사고 조사 보고서의 작성 : 사고 발생 일시, 사고 개요 및 발생원인, 사고의 유형 및 피해의 크기와 범위, 조치현황,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장단기 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

나.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 현장 사고조사반은 사고 조사 후 시정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총괄 보고
- 연구실 책임자는 동종·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대책 시행

다. 사후 관리

- 시정조치 계획에 따라 이행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시 연구활동 중지 명령
- 매년 말 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향후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반영

4 산업재해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분진·흙·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애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21년도 산업재해통계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
- '22년도에는 구성된 체계에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업무 종사자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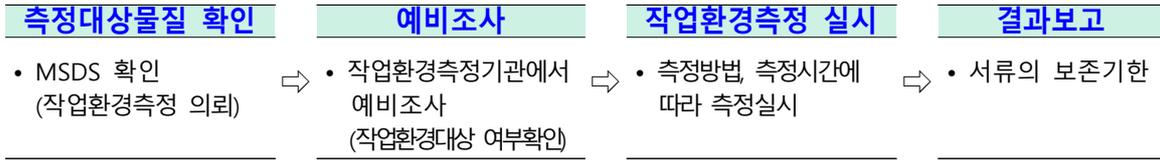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대상근로자 선정	교육방법 선정	교육 실시	서류보존
• 전직원 • 관리감독자 • 신규 입사자	⇒ • 위탁/집체/현장/인터넷	⇒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 서류 기록보존 (3년 보존 권장)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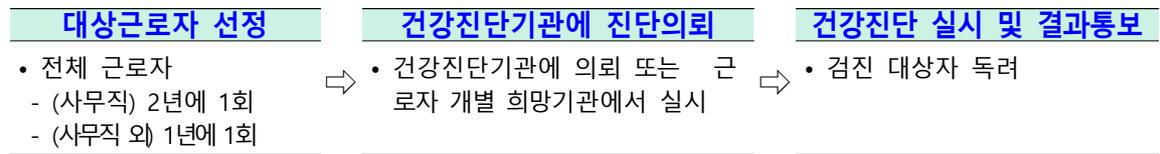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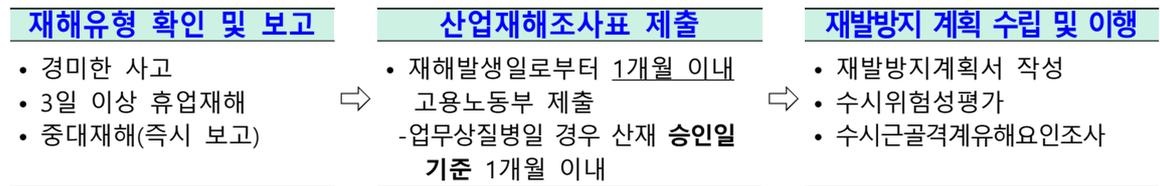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애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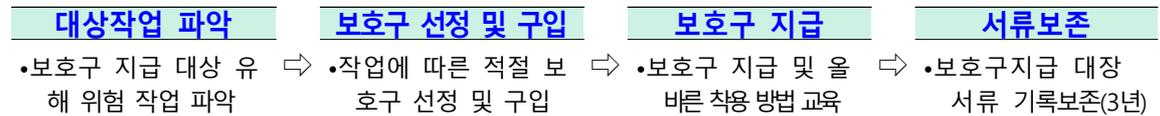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국립대학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한 조사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주체	주요 업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총장</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안전보건 총괄관리 책임자</div> <p>(사무·관리처장)</p>	<p><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관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안전 관리자</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1,000명 : 1명 1,000명 이상 : 2명 이상)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보건 관리자</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현업근로자 50~5,000명 : 1명 5,000명 이상 : 2명 이상)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관리감독자</div>	<p><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산업보건의</div> <p>(현업근로자 50인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산업안전 보건위원회</div> <p>(현업근로자 100인 이상)</p>	<p><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중대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5 중대재해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 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험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체계구축)**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으로 학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체계 구축
- **(환경조성)**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중대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목표 및 경영방침 마련

- 안전보건 법규 등 관련 규정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적극 발굴·제거 등 재해예방과 개선 활동 지속적 실시
- 모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안전문화 조성·지원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시 소통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 보장 등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재해예방의 핵심과제로 사업장별(특수학교, 소속기관, 본부 순)·직종별(급식, 청소, 시설 등) 유해성을 평가하고 유해요인 발견 즉시 개선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점검(분기별 1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험요소 개선, 안전보건 교육 등은 필수적

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 (주요항목)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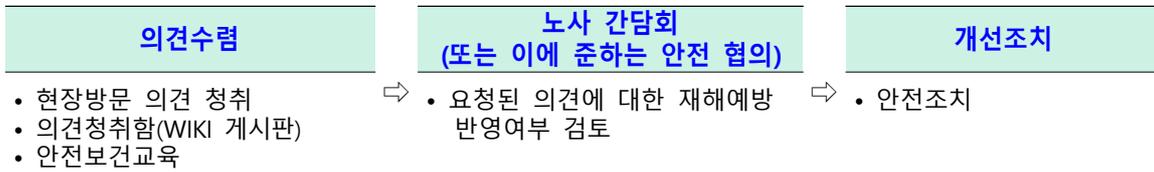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해당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기준(붙임1)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자체 평가 실시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기별 1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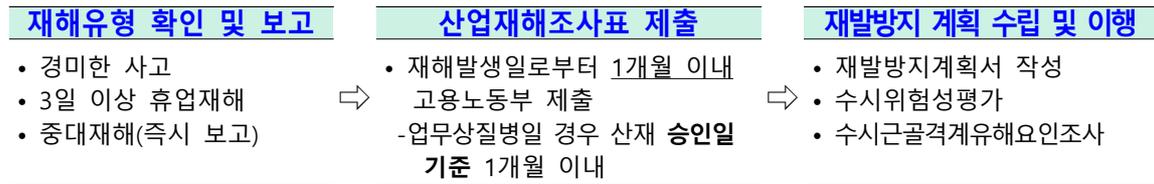
- 게시판 내 안전보건 건의함을 신설,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매뉴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

* 청소·환경미화,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등 직종별 산업안전보건 매뉴얼(교육부, '22.)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국가·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의 계약절차 등을 따르고 있어 기관 임의의 기준·절차 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를 고려하여 업체 선정

- (경쟁입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추진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시행령 제4조제2호)

- 업무의 중요도·계속성을 감안, 중대재해 업무담당 전담인력(2인 이상)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 설치 추진

※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의무적으로 설치

- 전담조직의 중대재해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이므로 두 업무는 구분 운영 추진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

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처벌대상	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교육기관 제외
의무 이행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4.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편성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9.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 2. 인력, 예산 지원 3.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4. 범죄

<< [범죄공통]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대학생활과 대학행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방 및 접근통제 관리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 활동
- 신변위협에 대한 행동요령 마련 및 홍보
- 음주, 흡연, 마약류 사용 등에 관한 규제와 교육 프로그램
- 사고 현장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발생 신고 접수·대응
- 범죄 발생 시 자체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 범죄 사건 발생 데이터 수집·관리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CEPTED) 기법 적용

-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 **(접근통제)**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접근통제시설'을 적정 하게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
- **(영역성 확보)**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 **(활동의 활성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기록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⑥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비전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		
목표	<p>“원상회복”</p> <p>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연속적 지원서비스 제공</p>	<p>“실질적 참여”</p> <p>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p>	<p>“평온하고 안전한 삶으로 복귀”</p> <p>신변 및 정보보호를 통한 2차피해와 재피해 예방</p>
추진 정책	<p>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p>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p>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p>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p>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정책기반 강화 	

1 일반범죄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설계*를 시행하고,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 폭행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 *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 등 CEPTED 기법 적용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비상벨 작동 시 학생지원센터, 통합보안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2 성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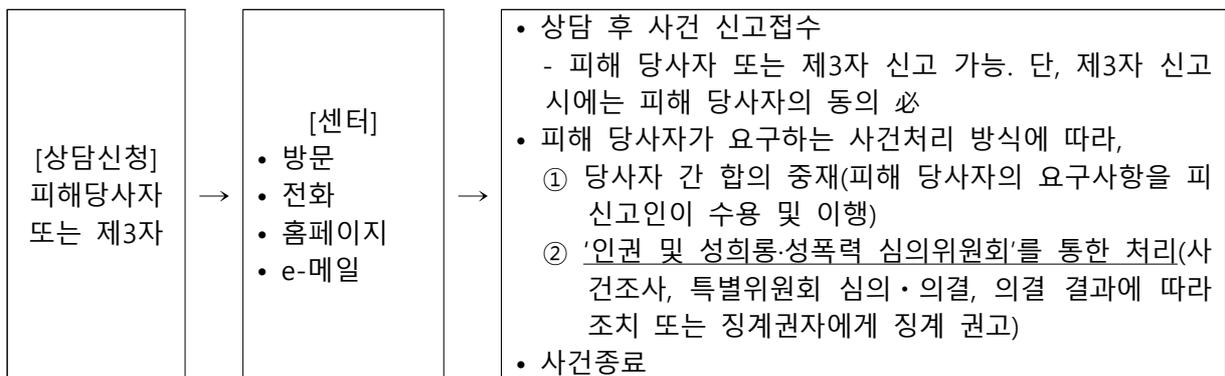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교제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성희롱 행위)** 성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 구축·운영
-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범죄 사전예방과 상담·조사·심의·조치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성폭력·성희롱 피해사건에 대한 센터 이용 절차>



※ 사건 조사 및 처리는 교내 「인권·성평등센터 규정」과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 시행세칙」에 근거합니다.

5. 기타

1 비상사태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총무실시계획 등 수립
 - 매년 총무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승인(11. 15한 제출, 12월 교육부 승인)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지자체 협조)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합동상황실 구성·준비(비상연락망, 전화·팩스, 비상전력 등 점검)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공통	대학	한화손해보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연구실	학교교육시설안전원	-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한도

재학생 경영자배상책임보험

(단위 : 천원)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신입생 (신입생 OT기간중)	신입생 행사중 상해사망	1억	-	-
	신입생행사중 상해휴유장애	1억	-	-
재학생 (학교시설)	배상책임	1억	3억	-
	교·내외 치료비	200만원	-	-

교직원단체상해보험

(단위 : 천원)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24시간 상해사망,휴유장애	사망담보	5천만원	-	-
	휴유장애	5천만원	-	-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교내·외 치료비 담보 등)	-	1백만원	-	-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 종양 치료비 등	-	2백만원	-	-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보상한도

(단위 : 천원)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화재(법정금액)	150,000	1,000,000	-
시설소유(관리)자	300,000	1,000,000	-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 보상한도

(단위 : 천원)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200,000	200,000	
장해급여	200,000	200,000	
요양급여	2,000,000	2,000,000	
장의비	100,000	100,000	
입원급여	50	50	

IV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1. 재난안전훈련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학생	4, 9, 10월	3	1,002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폐소생술 교육 ▪ AED 사용법 교육
기숙사 이용 시 안전성 확보(대피로 확보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내 기숙사 이용시 대피로 교육 ▪ 소방안전교육
공공기관 민관합동 소방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소방서 연계 가상화재 진압 소방훈련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학생	4, 9, 10월	3	1,100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폐소생술 교육 ▪ AED 사용법 교육
기숙사 이용 시 안전성 확보(대피로 확보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내 기숙사 이용시 대피로 교육 ▪ 소방안전교육
공공기관 민관합동 소방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소방서 연계 가상화재 진압 소방훈련

2. 대학 현업근로자안전보건교육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현업근로자	24년 6월, 12월	반기별 12시간	30
관리감독자	24년 7월	연간 16시간	4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현업근로자	25년 5월, 11월	반기별 12시간	31
관리감독자	25년 6월	연간 16시간	4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3. 연구실 안전교육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집합 교육	연 2회	553	
정기교육훈련	온라인 교육	연 2회	1,262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연구실 안전교육
정기교육훈련	연구실 안전교육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집합 교육	연 2회	-	-
정기교육훈련	온라인 교육	연 2회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연구실 안전교육
정기교육훈련	연구실 안전교육

4. 감염병 예방교육

2025년 교육·훈련 결과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온라인교육 (교육자료 공지)	61건	4,137	
감염병 예방 수칙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교육	▪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교육자료 공지

2026년 교육·훈련 계획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온라인교육 (교육자료 공지)	수시 교육	-	
감염병 예방 수칙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교육	▪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교육자료 공지

5. 성범죄 예방교육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학생 (대학원생 포함)	2025.3.31.~12.11	4	7,083
교직원	2025.04.01.~12.31	4	2,234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통합 예방교육 (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신임교원, 외국인교원, 고위직교원, 예비교사, 학군단, 장애학생, 인턴십 참여학생, TESOL 어린이 캠프 등)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학생(대학원생 포함)	폭력예방교육	2	8,000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4~5	2,30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통합 예방교육 (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예방 교육 (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 ▪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상·하반기 1회씩, 총 2회) ▪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상·하반기 1회씩, 총 2회) ▪ 신임교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상·하반기 1회씩, 단, 신임교원 없을 경우, 미 실시) ▪ 고위직 대상 맞춤형 추가 예방교육 (연 1회 이상) ▪ 신종 성범죄 등 추가 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요청시)

6. 비상대비 교육·훈련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학생	8월	30분	-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훈련	▪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 재난 및 안전사고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비 고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02-726-2310	재난안전대책본부
용산구청	02-2199-6114	당직실
	02-2199-6300	
서울소방재난본부	02-3706-1319	
용산소방서	02-6943-1474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서울지역본부직할
	02-6488-6200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서울서부지사
	02-393-0795	

□ 감염병 확산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비 고
질병관리청	1339	
용산구 보건소	02-2199-8012	원효로 보건분소
	02-2199-8380	

□ 범죄 및 비상사태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비 고
용산경찰서	182	
원효지구대	02-2198-0191	
국방부	1577-9090	
서울종합방재센터	02-726-2206	민방위 재난통제

붙임1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1. 재난 및 교육시설 안전사고	① 자연재난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1	-	-	1	-	-	
		재산피해(백만원)	-	-	-	14.7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1	-	-	0	-	-
			계	1	-	-	-	-	-
2. 학교안전 사고	① 학생안전 사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② 감염병	감염자 수	216	2,307	344	-	-	573	
		인명피해(사망)	-	-	-	-	-	-	
	③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	-	-	-	-	1	0.2	
		재산피해(백만원)	-	-	-	-	0.1	0.02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0	0
			부상	-	-	-	-	1	0.2
			계	-	-	-	-	1	0.2
	④ 산업재해	발생건수	-	-	1	1	6	1.6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1	1	6	1.6
			계	-	-	1	1	6	1.6
	⑤ 중대재해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3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건 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② 성범죄	숙명여자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 시행세칙 제24조(비밀유지)에 따라 사건 발생 및 피해자 건수에 대한 상세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4 기타	① 비상사태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붙임2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1. 재난 및 교시안사고	① 자연재난	-	0	0	0	0
	② 교시안사고	노후시설 개선공사	1,256	7,400	3,362	12,018
		연구실 유지보수공사	936	720	394	2,050
		소방시설 안전관리	40	125	252	417
		석면 안전관리	32	50	12	94
		시설물 안전 점검	17	17	17	51
계	2,281	8,312	4,037	14,630		
2. 학교안전사고	① 학생안전사고	-	0	0	0	0
	② 감염병	-	0	0	0	0
	③ 연구실 사고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2	14	24	60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12	10	11	33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29	33	30	92
	계	63	57	65	185	
④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관리	0.6	52	44	96.6	
	계	0.6	52	44	96.6	
⑤ 중대재해	-	0	0	0	0	
4. 범죄	① 일반범죄	-	0	0	0	0
	② 성범죄	폭력예방교육	7.4	7.4	7.4	22.2
		(인권)성고충 사건처리 및 상담원 교육비	3.6	3.8	4.5	11.9
		인권·성평등문화제 등 홍보/캠페인	4.6	8.7	8.7	22
		개인 및 집단상담 등 학생지원비	3.0	1.7	1.8	6.5
		계	18.6	21.6	4,008	62.6
5. 기타	① 비상사태	-	0	0	0	0